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환경분쟁조정법’ 전부 개정에 따라 회의운영 규정 등 심의·의결 및  
환경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본격 시행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황계영)는 3월 21일 오전 나인트리코하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024.3.19.)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 (붙임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붙임2)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 제도간의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 (붙임3)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개요

위원회는 의료,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여 기존의 환경분쟁을 포함한 환경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 직업환경 등 의료분야 18명, 독성·위해성 2명, 손해사정 2명, 갈등관리 1명 등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1기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조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 및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콜센터 1555-4582)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라면서,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 2. 제1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명단.
- 3.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사무국장	김현진	(044-201-7940)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장혜숙	(044-201-7972)



## 붙임 1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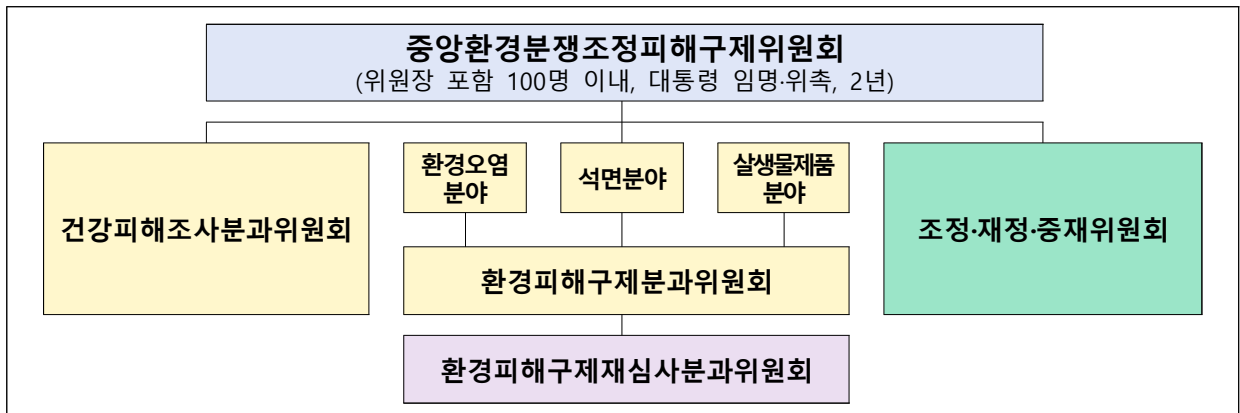
- (법적 근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24.3.19 시행) 제4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설치  
\* 기존 환경분쟁조정위원회(‘91.7.19 출범)는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
- (소속)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시·도에 두는 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 (기능)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관련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조)

▶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위원회 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 ※ 지방위원회는 30명 이내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8조제3항)하며,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같은 법 제8조제4항)
- (분과위원회)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16조)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직도>



## 붙임 2

## 제1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명단(57명)

□ 위원 구성(57명): 위원장 + 임명직 위원(2명), 위촉직 위원(54명)

연번	성명	소속
○ 임명직(3명)		
1	황계영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3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 위촉직(54명) 가나순		
4	고영림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5	구동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6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7	김동현	변호사김동현법률사무소 변호사
8	김명옥	경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
9	김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김영기	부산대학교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교실 부교수
11	김영훈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12	김원술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3	김유경	이대목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14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5	김재화	법률사무소 한비 대표변호사
16	김정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임상부교수
17	김정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부교수
18	김진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 소장
19	리원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20	문현주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 명예연구위원
21	박미영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2	박상진	전 우송대학교 교수
23	박소영	성균관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부교수
24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	박재성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명예교수
26	박주영	법무법인 담현 대표변호사
27	배옥남	한양대학교 약학과 교수

연번	성명	소속
28	배현주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9	서병성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30	손영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31	신대희	법률사무소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32	양원호	대구톨릭대학교 보건안전학과 교수
33	오정은	부산대학교 화공생명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교수
34	원장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
35	유진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부교수
36	윤두학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부교수
37	은동신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38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39	이민희	국립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지질과학전공 교수
40	이병권	한국환경연구원 국정정책평가실 연구위원
41	이선영	경상국립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시스템공학전공 교수
42	이용희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43	이은영	수원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44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45	이진화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46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7	정성환	가천대학교 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48	정인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49	정재우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50	진실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51	최윤형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교수
52	최정민	국립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
53	최진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54	하승연	가천대학교 길병원 병리과 교수
55	홍영습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56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57	황성익	법무법인 케이씨엘 피트너 변호사

□ **배경 및 경과**

○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영향조사(청원),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의 기능을 **중조위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 완료(`24.3.19 개정, `25.1.1 시행)

**(국정과제 68번)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체계** 구축

\* 각 법률·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접수 및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중조위 통합 (다만, 국가직권 건강영향조사, 석면기금 및 피해구제계정 관리, 피해구제법령 총괄 등 보건국 존치)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화학제품안전법」



**<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수행 주체 비교>**

구분	(기존) 환경분쟁조정	(이관, 신규) 건강영향조사(청원)	(이관, 신규)피해구제		
			석면	환경오염	살생물제품
근거법률	환경분쟁조정법 ('91~)	환경보건법 ('09~)	석면피해구제법 ('11~)	환경오염피해구제법('16~)	화학제품안전법 ('21~)
목적	국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환경피해의 모니터링	피해자 및 유족의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총괄	중조위	환경부	환경부		
접수	중조위	환경부	환경부(기술원)		
조사	중조위	과학원	환경부(기술원)		
심의	조정·재정·중재위원회	보건위원회	석면판정위, 피해구제심사위, 피해구제재심사위	피해구제심의회, 구제급여심사위, 피해구제정책위	살생물제관리위원회

개정 前, 전체 위원수 총 145명(개별 피해구제委 115명, 중앙조정委 30명 등)



개편	<b>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b>
----	------------------------

5개 분과위 + 조정·재정·중재위(100명 이내, 대통령 위촉·임명)